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43
----------	------

2017. 9. 1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17. 8. 14 문영민 의원 발의 (2017. 8. 17 회부)

2. 제안이유

- 「항공법」이 폐지되고 「공항시설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「항공법」을 「공항시설법」으로 수정함(제49조제1호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항시설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항공법」이 폐지¹⁾되고 「공항시설법」이 제정(확인 필요)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1) 항공법 개정(폐지) 이유 (2016.3, 법제처)

- 1961년 제정된 「항공법」은 항공사업, 항공안전,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,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,
-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「항공법」을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공사업법」 및 「항공안전법」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임.